

<b>기획재정부</b> <small>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</small>	<b>보도자료</b>		
	<b>보도일시 2008. 6.26(목) 석간부터</b>		
배포일시	2008. 6.25(수) 17:00	담당부서	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
담당과장	평가분석과장 박성동(2150-5550)	담당자	김의택 사무관(2150-5552) 윤윤국 사무관(2150-5553)

**제목: 기관장 「계약경영제」,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**

- ◆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, 지난 6.10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'공공기관 계약경영제'를 실시하고 있음
- ◆ 기획재정부는 6.26일부터 '공공기관 계약경영제' 적용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음

**1. 공공기관 「계약경영제」 개요**

-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존의 중장기 경영목표뿐만 아니라 '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'를 주무부처장관과 기관장이 체결하는 경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
- 이를 1년 단위로 평가하여, '미흡' 평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※ 공공기관 「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지침」을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게 6.10일 통보

**2.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에 계약경영제 확대**

-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경영계약 체결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경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
-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
  - 지난 6.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"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"을 개정함으로써 계약경영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음

**3.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 운영 개요**

- 기획재정부는 "기타공공기관 혁신지침" 개정을 통해
  - 경영계약 체결대상이 되는 기타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주무부처장관이 자율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- 동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17개 기타공공기관을 경영계약체결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음
  - 금융공기업 성격(4개) :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투자공사
  - 준정부기관 성격(7개) : 중소기업진흥공단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한국발명진흥회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소,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, 한국어촌어항협회
  - 자산 1천억원 이상(6개) : 한국사학진흥재단, 학교법인기능대학, 한국국제교류재단, 예술의 전당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울산항만공사

□ 이에 따라서 경영계약체결대상이 되는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

- 1년단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장관과 기관장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
-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도록 함

#### 4. 향후 추진계획

□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

-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현황,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영계약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

##### < 기 조치사항 및 향후 일정 >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및 시달('08.6.10)
- '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' 개정 및 경영계약체결 대상 기타공공기관 지정('08.6.26)
-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표준경영계약서 및 경영계획서 작성지침 시달('08.6.26)
- 기관장 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장관과 경영계약 체결('08.7월중)

첨부 「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지침」의 주요내용

### 기획재정부 대변인

< 첨부 > 「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지침」의 주요내용

#### ① 경영계획서의 개념

- 경영계획서는 공공기관장이 임기중 주요현안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을 담은 계획서

#### ② 경영계획서 작성대상
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신규임명 및 유임결정된 기관장
- 기타공공기관중 경영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기관장

#### ③ 경영계획서 작성기간 : '08. 6월 ~ '09. 3월말까지

- 지침시행일 이후 신규임명 기관장은 임명시~'09. 3월말까지

#### ④ 경영계획서 작성내용 : 주요현안과제 3~5개

- 공공기관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중점추진할 과제로서 기관장과 주무부처장관이 협의하여 선정

#### ⑤ 경영계획서 작성절차

-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와 협의 → 주무부처장관과 협의 → 경영계획서 초안 작성 →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 → 주무부처장관과 합의·서명 → 기획재정부 통보

#### ⑥ 경영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활용

-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성과를 주무부처가 1차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협의
- “미흡”평가의 경우 해임 등 사후조치